

『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
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7월 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7월 15일

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박 성 애

나. 제안이유

-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‘장애등급’이 ‘장애정도’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등급 명시 조문 개정

- “장애등급 1~3급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
“장애등급 4~6급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”
으로 변경
-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신산업정책과, 노동복지과,
관광진흥과, 체육진흥과, 아동보육과, 산림과와
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- 본 『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
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2019. 7. 1.부터 기존 ‘장애등급’이
폐지되고 ‘장애정도’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명시하고
있는 8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주요 개정내용은
 - ‘장애등급’을 ‘장애정도’로, ‘장애등급 1~3급 장애인’을 ‘장애
정도가 심한 장애인’으로, ‘장애등급 4~6급 장애인’을 ‘장애정도가
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일괄개정 조례(8개)

- 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
-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「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
- 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
- 「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」
- 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